

인천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시행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장추천위원회 운영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추천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총장추천위원회 내에 총장추천위원회 운영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총장추천위원회 운영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추천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3조(총장후보자 모집공고 등) ①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최초로 소집된 후 15일 이내에 총장후보대상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모집공고 기간은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총장추천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모집공고 기간을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모집공고는 인천대학교 홈페이지, 유관기관 홈페이지, 일간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되, 지원자격, 발전계획서 등 제출 구비서류, 제출기한, 제출방법, 접수 및 문의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적시한다.

④ 총장후보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2007년 2월 이후 발표된 논문, 단행본, 저서 등 모든 연구업적 전체에 대한 연구업적 목록을 포함한 제출 구비서류를 제2항의 모집공고 기간 내에 총장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총장추천위원회가 제출 구비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한다.

⑤ 모집공고의 내용, 절차, 제출서류 목록 등 모집공고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추천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총장후보초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자의 초빙을 위하여 총장추천위원회 내에 총장후보초빙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총장후보초빙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총장후보초빙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총장후보초빙위원회는 제3조의 총장후보자 모집공고 이후 1개월 이내에 초빙절차를 완료하여 총장추천위원회에 총장후보대상자 외부인사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⑤ 총장후보초빙위원회는 초빙 활동 결과 총장후보대상자로 초빙할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총장추천위원회에 총장후보자 모집공고 이후 1개월까지 그 사유 및 활동 경과를 적시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총장후보초빙위원회는 총장후보자의 초빙을 위한 방식, 절차 등 초빙 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후보초빙위원회는 총장추천위원회에 이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총장후보대상자의 확정에 필요한 서류접수 등) ①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모집·초빙된 사람은 총장추천위원회가 모집공고에 기재하거나 개별 고지한 제출 구비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제출 구비서류 또는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정정할 사유가 있으면 이를 지체 없이 고지하고 합리적인 기한을 정하여 보완·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총장추천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 구비서류를 접수받은 때에는 즉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총장후보대상자의 확정에 필요한 서류접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추천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총장후보대상자의 확정 등) ① 총장추천위원회는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모집·초빙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총장후보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규정 제12조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2. 규정 제12조 제3항의 결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3. 총장추천위원회가 모집공고에 기재하거나 개별 고지한 제5조의 제출 구비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 내(보완·정정 기한을 포함한다)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유무, 제출구비서류의 제출 여부를 심사하여 총장후보자 모집공고 완료 후 6주 이내에 총장후보대상자의 명단을 확정하고, 확정된 총장후보대상자 및 총장후보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장후보대상자의 확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추천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총장, 부총장, 평의원회 의장, 학장, 처장과 기타 교육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사람이 총장후보대상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총장추천위원회로부터 확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보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장후보대상자의 보직 사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추천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총장후보대상자의 서약서 등) ① 총장후보대상자는 본인 또는 특정인을 총장후보자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선거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장후보대상자는 공정한 선거활동 등에 관한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총장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대상자로부터 서약서를 제출받아 이를 인천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총장예비후보자의 선정) ①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대상자 명단 확정 후 3주 이내에 총장후보대상자 중에서 총장예비후보자를 5명 이내로 선정하고, 선정된 총장예비후보자 및 총장예비후보자에서 제외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예비후보자 선정 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 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총장추천위원회 검증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총장추천위원회는 규정 제16조 제3항과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증하기 위하여 총장추천위원회 내에 총장추천위원회 검증소위원회(이하 '검증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검증소위원회는 9명 내외의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의 2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총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증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을 겸하고, 검증소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검증소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검증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검증소위원회는 총장후보대상자 명단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검증절차를 완료하여 총장예비후보자에 대한 검증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고 보고서의 최종 채택 여부는 총장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⑦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예비후보자의 연구부정행위(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교

육부훈령 제263호)에 관한 사항을 검증하기 위하여 총장예비후보자에게 모집공고 시 제출한 연구업적 전체에 대한 원문과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받아 내·외부 전문기관이나 관련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⑧ 총장추천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총장예비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⑨ 총장추천위원회는 검증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의 총장예비후보자의 검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총장예비후보자의 정책평가 등) ① 총장추천위원회는 규정 제18조 제1항의 정책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한다.

② 정책토론회나 합동연설회에서 후보자별 질문 내용을 선정할 때에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정책토론회, 합동연설회 및 정책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추천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총장후보대상자와 총장예비후보자의 홍보활동 등) ① 총장후보대상자의 홍보기간은 총장후보대상자 확정공고일 부터 총장예비후보자 확정공고일 까지로 하고, 총장예비후보자의 홍보기간은 총장예비후보자 확정공고일 부터 가능하다.

② 총장후보대상자와 총장예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제4항의 선전벽보 부착행위
2. 총장 선출 관련 홍보활동을 위한 인천대학교 교원, 직원, 학생 및 동문에 대한 개별 방문행위(연구실을 포함한 호별방문) 또는 개별 방문을 하게 하는 행위

③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대상자와 총장예비후보자의 홍보활동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총장후보자의 추천) ①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예비후보자에 대한 정책평가 결과에 따라 3명 이내의 총장후보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총장후보자 및 총장후보자에게서 제외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자 선정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고, 총장 임기만료 2개월 15일 전까지 3명 이내의 총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③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한 후 지체 없이 총장후보자 추천

활동결과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총장후보자의 등록) ① 총장후보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총장추천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1. 총장후보자 수락서
2. 약력서
3. 소견서
4. 기타 총장추천위원회가 총장후보자의 등록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요청한 서류 등

② 총장후보자의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추천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총장후보대상자 등의 사퇴) ① 총장후보대상자 또는 총장예비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경우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은 총장추천위원회에 이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총장추천위원회는 이를 수리한다.

② 총장후보대상자 또는 총장예비후보자의 사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추천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및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제350호, 2020.10.3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호, 2024.1.1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제 대 총장 선출을 위한 총장후보대상자 서약서

본인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제 대 총장후보대상자로서 추천 절차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공모 과정에 있어 「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법」·「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및 시행지침을 준수한다.
2. 인천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정책대결로 총장후보대상자 상호간 공명 정대한 선의의 경쟁을 하며, 비난, 음해 등, 기타 총장 공모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일체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추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총장추천위원회와 총장후보대상자 상호간의 협약된 사항은 철저히 준수하고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에 승복한다.

년 월 일

인천대학교 총장후보대상자 (인)

인천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